

중재절차의 개요

중재는 공정불만 해결절차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중재로 인해 이 권리가 침해될 수 없습니다.



공정불만 해결절차를 구하기 전에 또는 이와 동시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전문 행정법 판사가 중재절차를 주재합니다.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는 중재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재 결과 도달된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며, 모든 참여자가 합의서에 서명합니다.



중재절차 기간에 열린 모든 토론은 비밀로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다음 자료는 조기 중재 시스템에서의 부모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방 영유아 프로그램 서비스 조정기관**

- **지방옹호기관:**

아동 및 청소년 대변기관(Advocates for Children and Youth), (410) 547-9200

특수장애 영유아를 위한 가정지원 네트워크, (410) 767-0652, (800) 535-0182

메릴랜드 장애인법센터, (410) 235-4700 또는 (800) 233-7201, 문자전화 (410) 235-4227

메릴랜드 대학 법학부 일반진료 클리닉, (410) 328-3295

- **메릴랜드 주 교육청**

특수교육/조기 중재 서비스 분과

메릴랜드 영유아 프로그램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

음성 (410) 767-0261 • 무료 음성 (800) 535-0182

팩스 (410) 333-8165 • 문자전화 (410) 333-0731

Robert L. Ehrlich, J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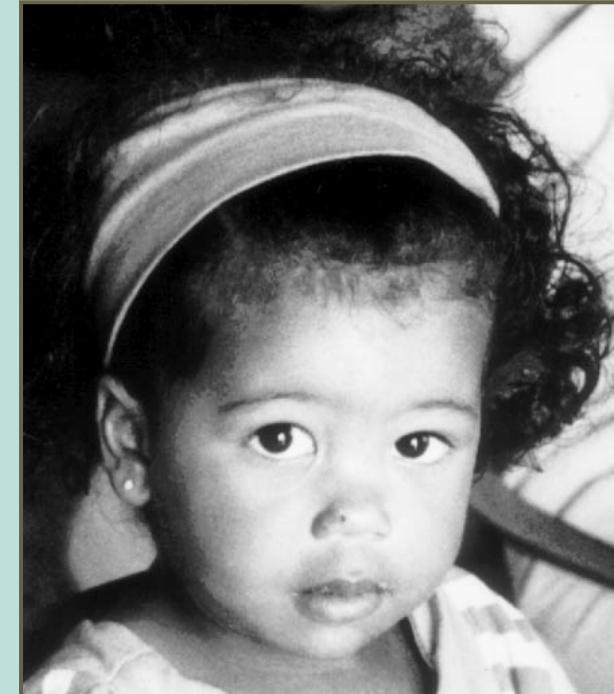
주지사

Edward L. Root
메릴랜드주 교육위원회 회장

Nancy S. Grasmick
주 교육감

Carol Ann Baglin
주 부교육감
특수교육/조기 중재 서비스 분과

메릴랜드주 교육청은 채용이나 프로그램에 참가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인종, 피부색, 성, 연령, 출신국가, 종교 또는 장애로 인해 차별하지 않습니다. 해당 국의 정책과 관련된 문의는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Branch, 전화 410-767-0246, 팩스 410-333-2226, 또는 문자전화 410-333-6442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특수교육/조기 중재 서비스 분과가 미국 교육부 산하의 특수교육 및 재활 서비스국의 자금 지원(장애인 교육법 제C부, 허가번호 H181A020124)을 통해 개발, 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명시된 견해가 반드시 미국 교육부 또는 기타 연방기관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렇게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보는 저작권법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독자들은 이 자료를 자유롭게 복사 및 공유할 수 있으나 제작자는 메릴랜드주 교육청, 특수교육/조기 중재 서비스 분과임을 표기하여 주십시오.◆ 미국장애인법(ADA)에 의거하여 이 자료는 요청 시 다른 형태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메릴랜드주 교육청 특수교육/조기 중재 서비스 분과는 음성 410-767-0261, 팩스 410-333-2661, 문자전화 410-333-0731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중재 시스템에서의 중재

메릴랜드 주 교육청
특수교육/조기 중재 서비스 분과
메릴랜드 영유아 프로그램



경우에 따라, 조기 중재 시스템에 의 가족 참여와 관련해 서비스 제공자와 부모가 다음과 같은 몇몇 사항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 ❖ 자격 결정
- ❖ 아동의 평가 또는 판단
- ❖ 유자격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 ❖ 조기 중재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재정적 의무

이러한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의사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서로 동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부모의 불만 처리를 돋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공정불만 해결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공식 절차에 해당되며 심리에서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행정법판사의 판결이 요구됩니다. 이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영유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공정불만 해결절차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중재는 부모가 제기하는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데 선택할 수 있는 다소 비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중재는 대화의 문을 통해 상호간의 문제 해결에 그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간에 실무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게 합니다. 중재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절차로 부모들은 공식 공정불만 해결절차 이외에 또는 그 대신으로 중재절차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재는 공정중재인의 지도 아래 분쟁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을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가정과 서비스 제공자를 분리시키는 쟁점에 대한 토론에 주력합니다. 쌍방은 사실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재인은 아동과 가정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합의를 촉진합니다.

중재인의 목적은 아동이 해당 조기중재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는 신의성실로 수행 가능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중재 결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며, 모든 참여자가 합의서에 서명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모들은 공정불만 해결절차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인과 모든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의 비밀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모들의 중재요청 방법

❖ 매릴랜드 행정심리국에 조기중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가 상호 합의 하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중재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 공정불만 해결절차 이전에 중재절차를 요청하는 서한을 메릴랜드 영유아 프로그램 앞으로 보내십시오.

아동의 복지가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조기중재 서비스는 가정이 제기한 불만이나 절차에 의해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